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2015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5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2015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별첨: 지적사항 1부.

2016 년 4 월 14 일

학교법인 영남학원
감사 한재권 (인)

감사 김용진 (인)

피감사자 (임회인)

직명 영남학원 사무국장

성명 이원희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남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영남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별첨: 지적사항 1부.

2016 년 4 월 14 일

학교법인 영남학원

감사 한재현 (인)

감사 한용순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영남대학교 총장

성명 노성준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영남대학교의료원의 210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별첨: 지적사항 1부.

2016 년 4 월 14 일

학교법인 영남학원

감사 한대진 (인)

감사 한용진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영남대학교의료원장

성명 최수영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회 및 이사장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법인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영남대학교 및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인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영남대학교 및 영남이공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학교법인의 부속병원회계의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별첨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7,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7 및 부속병원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등 총 18건의 소송에는 피고로 제소되어 관할 법원에 계류중인 바,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61 (대봉동)

세 영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 우 호



2016년 4월 1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